



의안번호	제 2018 - 8호
보 고 연 월 일	2018. 4. 30. (제8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16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11명)	1
3. 주요 안건	1
II.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2
1. 요약	2
2. 구체적 논의 결과	3
II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1(체포·감금)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6
1. 일반적 기준	6
가. 현행 양형기준	6
나.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6
다. 제2유형(보복목적체포·감금)	9
라. 제3유형 (누범체포·감금)	1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2
가. 현행 양형기준	12
나.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12
다. 형량분포	13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13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4
가. 현행 양형기준	14
나.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14
다. 형량분포	14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14
4. 소결론	15
IV.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1(체포·감금)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16
1. 일반체포·감금	16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8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9
V.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3(아동학대중상해·치사)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21
1. 현행 양형기준	21
2.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22
3. 형량분포	22
가. 아동학대중상해	22
나. 아동학대치사	23
4. 20대 국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24
5. 권고 형량범위 수정안 - 의견 불일치	24
가. 가중영역 상한만 상향하자는 의견(6인)	24
나. 현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전부 수정하자는 의견(2인)	25
다.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2인)	26
라. 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유지하되, 상한은 상향하자는 안(1인)	27
6. 소결론	28
V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3(아동학대중상해·치사)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29
1. 요약	29
2. 구체적인 검토 결과	29
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의 양형인자 추가 여부	29
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질적 구분 변경 여부 :	

의견 불일치	31
다.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의 특별가중인자 추가 여부 : 의견 불일치	32
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의견 불일치	33
3. 나머지 양형인자 : 현행 유지(의견 일치)	34
VI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35
1. 체포·감금 유형 집행유예 기준	35
가. 요약	35
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	35
2. 유기·학대 유형 집행유예 기준	39
가. 요약	39
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	39
3.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집행유예 기준	41
가. 요약	41
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	41
VIII.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43
1. 대유형1 [강요]	43
가. 현행 양형기준	43
나. 제1유형(일반강요)	43
다. 제2유형(중·특수강요)	44
라. 제3유형(누범강요)	46
2. 대유형2 [권리행사방해 등]	48
가.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48
나. 제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	49
다. 제3유형(중권리행사방해)	49
라.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50
3. 소결론 - 형량범위(안) : 의견 일치	51

IX.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52
1. 양형인자	52
가. 강요(대유형1)	52
나. 권리행사방해 등(대유형 2) : 현행 유지(의견 일치)	54
2. 집행유예 기준	55
가. 강요(대유형1)	55
나. 권리행사방해 등(대유형 2) : 현행 유지(의견 일치)	57
X. 향후 일정	57

【별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휴재,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 이용, 차호동, “공갈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 검토” ■ 송오섭,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체포·감금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 송오섭,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 송오섭,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양형인자 수정안 검토(추가)” ■ 송오섭,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 검토” ■ 이용, 차호동,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 이용, 차호동, “체포·감금범죄 형량범위 추가수정 검토” ■ 전휴재,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2” ■ 이용, 차호동,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
|---|



I. 제11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4. 16.(월) 16:00 ~ 21: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희연, 송오섭, 이용, 이진국, 전휴재, 차호동,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권상진(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참관)

3. 주요 안건

-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1(체포·감금) / 대유형3(아동학대중상해·치사)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II. 공갈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 요약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별도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포섭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 있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구체적 논의 결과

가.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할지(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9인) :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견해

- 공갈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할 당시 양형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의 하나로 포함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만장일치로 제외하기로 의결. 당시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인자에서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에서도 제외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이해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폭력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강요범죄, 손괴범죄)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모두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이와 달리 양형인자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기준에만 반영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 현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 중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포섭이 가능하고 실무에 있어서도 2인 이상 공동이나 흉기 사용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음
- 현재 다수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정의 규정을 두

고 있음. 유독 공갈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함으로써 종전과 다른 정의 규정들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칫 실무상 혼선을 야기할 우려 있음

(2) 소수 의견(2인) : 추가가 필요하다는 견해

- 양형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예시에서 제외할 경우 집행유예 기준의 참작사유에서도 함께 삭제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는 범죄의 행위반가치를 가중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입법적으로도 특수공갈죄로 별도로 규정하여 법정형 가중
- 폭력적 요소가 내포된 범죄군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성범죄나 강도범죄의 경우 가중인자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실제 사례에서 보면 이는 강도 직전의 단계. 이와 같이 범정이 중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로 봄이 타당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일반공갈죄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사유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특수공갈죄로 의율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현행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규정

을 신설하고, 그 정의규정에 현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양형인자 정의 부분을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

나. 나머지 집행유예 기준 ⇨ **현행 유지(의견 일치)**

Ⅲ.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1(체포·감금)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일반적 기준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1년6월
2	보복목적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2년	1년-3년	2년-4년

나.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라 추가된 죄명 : 아래 표의 구성요건 중 파란색 표시의 죄
- 파란색 표시 부분 법정형 변경 있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체포· 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7년 ↓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2년 ↑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¹⁾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7년6월 ↓ 15년 ↓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7년6월 ↓ 15년 ↓ 10년6월 ↓ 3년 ↑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7년6월 ↓ 15년 ↓ 10년6월 ↓ 3년 ↑

1) 다음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이라는 약어를 사용함

(2)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1년6월

(3) 형량분포

(가) 일반체포·감금(1유형) 형량분포²⁾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음(94%)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8	10	12	24		
감경	수	10	13	3	0	1	0	27	5.70
	비율	37.0	48.1	11.1	0.0	3.7	0.0	100.0	
기본	수	2	17	2	4	3	0	28	7.21
	비율	7.1	60.7	7.1	14.3	10.7	0.0	100.0	
가중	수	0	1	3	6	1	1	12	10.50
	비율	0.0	8.3	25.0	50.0	8.3	8.3	100.0	
전체	수	12	31	8	10	5	1	67	7.19
	비율	17.9	46.3	11.9	14.9	7.5	1.5	100.0	

○ 2015년 9월 23일 이전 선고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영역
		4	6	8	10		
감경	수	2	2	1	0	5	5.60
	비율	40.0	40.0	20.0	0.0	100.0	
기본	수	2	5	0	1	8	6.00
	비율	25.0	62.5	0.0	12.5	100.0	
가중	수	0	0	1	0	1	8.00
	비율	0.0	0.0	100.0	0.0	100.0	
전체	수	4	7	2	1	14	6.00
	비율	28.6	50.0	14.3	7.1	100.0	

2) 양형기준 시행 이후 ~ 2016. 12. 31.까지 사건 중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임

○ 2015년 9월 24일 이후 신고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8	10	12	24		
감경	수	8	11	2	0	1	0	22	5.73
	비율	36.4	50.0	9.1	0.0	4.5	0.0	100.0	
기본	수	0	12	2	3	3	0	20	7.70
	비율	0.0	60.0	10.0	15.0	15.0	0.0	100.0	
가중	수	0	1	2	6	1	1	11	10.73
	비율	0.0	9.1	18.2	54.5	9.1	9.1	100.0	
전체	수	8	24	6	9	5	1	53	7.51
	비율	15.1	45.3	11.3	17.0	9.4	1.9	100.0	

(나) 상습·특수체포·감금(제3유형) 형량분포

○ 2015. 9. 23.(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 이전 신고

영역		형량(월)						전체
		6	10	12	14	16	24	
전체	수	0	0	2	0	0	0	2
	비율	0.0	0.0	100.0	0.0	0.0	0.0	100.0

○ 2015. 9. 24. 이후 신고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월)
		6	10	12	14	16	24		
전체	수	5	4	15	1	2	1	28	11.43
	비율	17.9	14.3	53.6	3.6	7.1	3.6	100.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신고사건의 형량분포를 보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음
- 양형기준 수정에 따라 추가된 상습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의 형량

분포도 일반체포·감금에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됨(1건만 제외)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1년6월

다. 제2유형(보복목적체포·감금)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추가된 죄명 : 없음
- 법정형 변경 없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1년↑

(2)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보복목적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3) 형량분포

- 양형기준 시행 이후 2유형에 해당하는 사례 없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의견 불일치³⁾

(가) 다수 의견(9인) ⇨ 현행 유지

- 양형기준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 설정 후 법정형이 변경되거나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괴리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그런데 보복 목적 체포·감금에 대하여는 현행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수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
- 소수 의견에 따르면, 법정형이 다른 보복 목적 폭행과 보복 목적

3) 이 부분 권고 형량범위는 2018. 3. 12. 제115차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임

협박, 보복 목적 체포·감금은 기본 범죄의 법정형을 반영하여 모두 수정되어야 함. 그러나 제6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보복 목적 체포·감금과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같은 보복 목적 상해는 물론이고 보복 목적 폭행, 보복 목적 협박에 대하여 모두 현행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

- 가중영역의 하한을 1년 4월로 상향하자는 소수의견은 감경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하한 사이의 형량범위 중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인 수정을 하자는 취지. 그러나 형량범위 중첩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지난 8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중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음

(나) 소수 의견(3인) ⇨ 가중영역의 하한만 1년 4월로 상향

- 보복 목적 상해, 보복 목적 체포·감금과 보복 목적 폭행, 보복 목적 협박의 법정형은 모두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기본 범죄(상해, 체포·감금, 협박, 폭행)의 법정형이 다름. 보복 목적 체포·감금은 보복 목적 협박, 보복 목적 폭행과 차별을 둘 필요 있음
- 보복 목적 체포·감금의 경우 같은 법정형 하한을 가진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가중영역의 상·하한이 지나치게 낮음. 일반물건방화, 도주원조, 공용물파괴,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양형기준을 보면 가중영역의 하한이 모두 1년 6월 이상
- 범죄의 태양이 다양하여 형량범위 중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해·폭행·협박과 달리 체포·감금은 범죄의 태양이 다양하지 아니하여 형량범위 중첩을 허용할 필요가 없음

(다) 형량범위(안)

■ 다수 의견(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보복목적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 6월

■ 소수 의견(가중영역 하한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보복목적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 1년4 월-2년6 월

라. 제3유형 (누범체포·감금)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상습·특수체포·감금 제외
- 누범체포·감금 법정형 변경 있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괄호는 변경 전)
제3유형 누범체포 ·감금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1년~12년(2년 ↑) 2년~20년(3년 ↑)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3호	2년~20년(3년 ↑) 3년~25년(5년 ↑)

(2)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2년	1년-3년	2년-4년

(3) 형량분포

- 양형기준 시행 이후 누범체포·감금에 해당하는 사례 없음

(4) 권고형량범위 검토 ⇨ 감경영역의 상한과 기본 및 가중영역 하한을 하향 조정(의견 일치)

(가) 기존 권고 형량범위 설정 경위

- 법정형,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형의 상해보다는 하향하고, 해당 유형의 폭행, 협박보다는 상향하였음

(나) 형량범위

- 징역 2년 내지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 법정형이 하향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 있음
- 다만 변경된 법정형이 최고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도 감안
- 감경영역의 상한과 기본 및 가중영역의 하한을 하향하되, 감경영역의 하한과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은 현행을 유지함이 상당함
 -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유지하는 방안은 전문위원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됨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체포·감금	6월- 2년 1년 6월	10월- 1년 3년	1년6월- 2년 4년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나.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1년 ↑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2년 ↑

다. 형량분포

- 양형기준준수율 높음(93.6%)
- 2015년 9월 23일 이전 선고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영역
		6	8	10	12	14	18	48		
감경	수	3	1	1	1	0	1	0	7	9.43
	비율	42.9	14.3	14.3	14.3	0.0	14.3	0.0	100.0	
기본	수	0	0	1	2	1	1	0	5	13.20
	비율	0.0	0.0	20.0	40.0	20.0	20.0	0.0	100.0	
가중	수	0	0	0	0	0	0	1	1	48.00
	비율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전체	수	3	1	2	3	1	2	1	13	13.85
	비율	23.1	7.7	15.4	23.1	7.7	15.4	7.7	100.0	

- 2015년 9월 24일 이후 선고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6	8	10	12	18	24		
감경	수	5	6	2	4	0	0	17	8.59
	비율	29.4	35.3	11.8	23.5	0.0	0.0	100.0	
기본	수	0	0	0	6	2	0	8	13.50
	비율	0.0	0.0	0.0	75.0	25.0	0.0	100.0	
가중	수	0	0	0	2	0	7	9	21.33
	비율	0.0	0.0	0.0	22.2	0.0	77.8	100.0	
전체	수	5	6	2	12	2	7	34	13.12
	비율	14.7	17.6	5.9	35.3	5.9	20.6	100.0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선고사건의 형량분포를 보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 권고형량 범위 내에 절대 다수의 사건이 포섭됨
- 그 밖에 권고형량의 범위를 수정할 만한 사유 없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현행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나.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3년↑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무기, 5년↑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무기, 3년↑

다. 형량분포

- 해당사례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변동 등 수정이 필요한 사정 변경이 없음
- 법정형, 권고형량 범위가 일치하는 폭행치사죄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음

4. 소결론

▣ 형량범위(안)

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1) 다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3	누범체포·감금	6월-2년1년6월	1년10월-3년	1년6월2년-4년

(2) 소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1년4월	10월-2년	1년4월-2년6월
3	누범체포·감금	6월-2년1년6월	1년10월-3년	1년6월2년-4년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IV.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1(체포·감금)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1. 일반체포·감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상습체포·감금 또는 누범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⁴⁾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기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유형분류 변경으로 소유형3이 누범체포·감금 범죄만 남게 되었으므로 (3유형 제외)로 수정 가능

■ 구체적인 검토

-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 (2) (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삭제
 - 유형분류 변경으로 특수군이 1유형에 포섭됨(‘특수’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 따라서 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는 삭제함이 타당
- (3) 동종 누범(상습체포·감금 또는 누범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상습체포·감금 또는’부분 제외
 - 지난 제8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종 누범과 상습범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기로 정함
 - 다만 유형분류 변경으로 소유형3이 누범체포·감금 범죄만 남게 되었으므로 괄호 부분을 ‘3유형 제외’로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 필요
- (4)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부분 제외
 -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한정 문구를 삭제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경미한 상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구체적인 검토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2)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부분 제외

○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한정 문구를 삭제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구체적인 검토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V.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3(아동학대중상해·치사)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 설정 당시 권고 형량범위 설정 경위

- 이른바, '울산 계모사건'⁵⁾을 계기로 2014. 1. 28. 제정됨. 당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과정에 있던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중상해·치사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 설정 당시 신설범죄로서 형량분포에 대한 통계자료 부존재 ⇨ 아동학대중상해죄(3년 ↑), 아동학대치사죄(무기, 5년 ↑)와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여 양형기준 설정
-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당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높은 강간(13세 이상)범죄와 동일하게, 아동학대치사죄는 같은 이유로 강간(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범죄와 동일하게 각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

5) 2011. 5.경부터 2013. 10. 사건 당일까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7세이던 여아가 사망한 사건.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상해치사가 인정되어 징역 15년,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18년이 선고되어 확정됨

2.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 및 법정형 - 변동 없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3년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무기, 5년 ↑

3. 형량분포

가. 아동학대중상해

(가) 단일, 동종경합범 사건

- 최초 양형기준 설정 후 2016. 12. 31.까지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은 2건이고, 그 선고형량은 감경영역 1건 24개월, 가중영역 1건 96
개월이었음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4	96		
감경	수	1	0	1	24.00
	비율	100.0	0.0	100.0	
가중	수	0	1	1	96.00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1	1	2	60.00
	비율	50.0	50.0	100.0	

(나) 이종경합범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4건임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4	30	72	96		
감경	수	1	0	0	0	1	24.00
	비율	10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1	0	0	1	30.00
	비율	0.0	100.0	0.0	0.0	100.0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4	30	72	96		
가중	수	0	0	1	1	2	84.00
	비율	0.0	0.0	50.0	50.0	100.0	
전체	수	1	1	1	1	4	55.50
	비율	25.0	25.0	25.0	25.0	100.0	

- 4건 중 1건이 96개월로 가중영역의 상한(84개월)보다는 높으나 특별가중영역의 상한(126개월) 이내에 있음.⁶⁾ 다만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6. 12. 31.까지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움

나. 아동학대치사

단위: 명, %(2016. 12. 31.까지 기준)

구분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30	36	42	60	72	96	102	120	180	240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감경	2	2									4	33.00
	가중				1		3	1				5	90.00
	소계	2	2		1		3	1				9	64.67
이종경합범	감경			1								1	42.00
	가중					1			1	2	1	5	158.40
	소계			1		1			1	2	1	6	139.00
전체	감경	2	2	1								5	34.80
	가중				1	1	3	1	1	2	1	10	124.20
	소계	2	2	1	1	1	3	1	1	2	1	15	94.40

- 29건 중 1건이 20년, 3건이 15년이고, 나머지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영역의 상한(13년 6개월)의 범위 내에 있음. 다만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7. 12. 31.까지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된 사례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움

6) 위 사건은 특별가중인자로서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가중사안이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영역의 범위(4년 내지 10년 5월) 내에서 선고되어 양형기준을 준수한 사안이었음

■ 2017년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죄 제1심 선고결과

- ⇒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송오섭 전문위원의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양형기준 수정 검토(형량범위, 양형인자)’ 중 해당 부분 참조

4. 20대 국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 현재 아동학대중상해죄 및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12849호)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 ⇒ 5년 이상)

5. 권고 형량범위 수정안 - 의견 불일치

가. 가중영역 상한만 상향하자는 의견(6인)

-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이는 주로 학대의 정도가 중하거나 지속적·반복적인 학대로 인하여 아동에게 중상해 또는 치사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사안(이는 대부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임), 즉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하여 현행 양형기준이 적절한 형량을 권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파악됨. 따라서 감경영역이나 기본영역보다는 주로 가중영역이 문제되고 있고, 이는 가중영역의 권고형량 범위(특히 가중영역의 상한)를 적절히 상향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향후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개정취지 및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양형기준 수정원칙에 부합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양형기준을 먼저 수정함으로써 자칫 개정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의 폭은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국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에 대하여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가중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의 양형재량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하더라도, 현행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중상해와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 및 양형기준의 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동일한 상해치사에 대하여 제6기 양형위원회는 가중영역의 상한만을 8년으로 상향하는 양형기준수정안을 확정

1	상해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8년
---	------	-------	-------	---------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10년

나. 현행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전부 수정하자는 의견(2인)

-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으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결과가 중한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현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개정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입법과 양형기준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데 필요하다면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서 적어도 유사 법정형 범죄 중 생명침해에 이르지 않은 범죄보다는 중한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상당함

-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된 유사범죄 중 현행 아동학대치사보다 감경·기본·가중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형량범위가 무겁게 규정된 범죄는 아래와 같음

순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3년6월	2년6월-3년 3년-5년 6년	4년-5년-7년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5년6월	4년-5년-7년 8년	6년-7년-9년 10년

다.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2인)

- 양형기준의 수정은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유지됨. 그런데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 당시와 비교하여 법정형의 변경이 없고, 양형기준 설정에 참고가 된 범죄군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변동이 없음. 또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현행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무와의 괴리도 존재하지 않음
-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과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임.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볼 만한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라. 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유지하되, 상한은 상향하자는 안(1인)

-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하한을 유지하여 수정의 폭을 적게 하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각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모두 상향하는 것이 타당함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3년 3년6월	2년6월- 5년 6년	4년- 7년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5년 5년6월	4년- 7년 8년	6년- 9년 10년

6. 소결론

▣ 형량범위(안)

1안 : 가중영역의 상한만 수정(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 7년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7년	6년- 9년 10년

2안 : 권고형량 범위를 전부 수정(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3년 3년6월	2년6월 3년-5년 6년	4년5년-7년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5년 5년6월	4년5년-7년8년	6년7년-9년10년

3안 : 현행 유지(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4안 : 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현행유지, 상한은 상향(1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3년 3년6월	2년6월-5년6년	4년-7년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5년 5년6월	4년-7년8년	6년-9년10년

Ⅵ.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대유형3(아동학대중 상해·치사)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1. 요약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삭제하자는 소수 의견 있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감경인자로 분류하자는 소수 의견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소수 의견 있음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구체적인 논의 결과

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의 양형인자 추가 여부

(1) 가중적 양형인자로 추가 : 의견 일치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에 해당함.
영유아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기 위하여 특별히 심신이

보호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영유아가 유기·학대의 대상이 될 경우에 너무 어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외부에 적절한 구호를 요청할 수도 없음.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하여 중상해를 가할 경우 그 후유증이 매우 커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함.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그럼에도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2017년의 경우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임.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아동학대범행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질적 구분(일반양형인자 v. 특별양형인자) : 의견 불일치

(가) 다수의견(10인)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는 범행경위, 비난가능성, 처벌필요성 등에 관한 스펙트럼이 넓은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권고하여야 함
-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할 경우 실무상 적지 않은 사안이 가중영역에 해당하게 되어 양형기준이 현재의 양형실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는 사실상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형(하한 4년)만을 권고하는 결과를 낳게 됨

(나) 소수의견(1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중적 양형인자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중인자보다는 특별가중인

자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기준상으로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질적 구분 변경 여부 : 의견 불일치

(1) 현행(특별감경인자) 유지 의견(6인)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유기·학대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 정의규정을 엄격히 정하였음(2017 양형기준 440쪽 상단 참조)
- 다른 아동 대상 범죄에서의 양형인자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 성범죄 양형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더욱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간치상/상해, 강간치사 등)의 법정형은 아동학대중상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도 높음. 그럼에도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에 대한 중벌의 필요성만을 내세워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하는 것은 현행 양형기준 체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와의 균형과 맞지 않음
- 피해아동의 부모나 친족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낼 위험성이나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된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행에서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음. 이러한 우려는 양형심리의 강화로 해결할 문제
-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 등과 관련한 제 문제에 대하여, 현행 양형기준 체제를 유지하되 이에 대한 공청회 등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전체적인 관점에서 양형기준(인자)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음(84차 전체회의) ⇨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별도로 논의·수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7)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의견(4인)

-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아동이 처벌불원의사를 숙고하여 밝힐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당해 범죄행위자가 부모 또는 친족인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낼 위험도 상당함
- 피회회복의 대상 역시 피해아동보다는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된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 적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아동학대중상해·치사에 있어서는 처벌불원 등의 효과를 반감시켜 실질적으로 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3) 현행을 유지하되, 친권자의 범행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의견(1인)

- 전체적인 양형기준의 체계상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나, 친권자에 의한 범행의 경우 소수의견이 제시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는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다.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의 특별가중인자 추가 여부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9인) : 추가 불요

- 아동학대중상해·치사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중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는 범행(신분범).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를 특별가중(행위자)인자로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소적 가중요소를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친권자, 후견인 이외의 보호자(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범행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로서 그 범행 장소에 관계없이 특별가중(행위자)인자에 포섭됨

- 친권자, 후견인 등에 의한 아동학대범행의 장소는 대부분 '가정'인데, 친권자, 후견인에 의하여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행과 그 외의 이른바 '특별보호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가벌성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

(2) 소수 의견(2인) : 추가 필요

- 아동학대중상해·치사의 경우에 위 가중인자가 규정된 성범죄의 제1대유형 중 제4 중유형인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장소에서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 중한 처벌 필요
-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나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성상 특별한 장소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장소적 가중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 제116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나 회의 후 소수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들이 추가 연구를 거쳐 의견을 철회함
- 결과적으로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지 않는 데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됨

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9인) : 현행 유지

-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뿐만아니라 유기·학대 유형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음
- 유기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나 체벌로 인한 범죄 등에 있어서는 미필

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과 아동학
대중상해·치사 범행이 부합될 수 있음

- 실제 사안에서도 예를 들어, 영유아를 엮어 놓고 재우다가 잠들어
서 영유아가 질식사한 사안 등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등 실
무에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고 선고형량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사
례가 있음

(2) 소수 의견(2인) :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죄는 중한 결과(중상해, 사망)에 대하여 원
칙적으로 과실범이 원칙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과 아동학
대중상해·치사 범행은 성질상 부합되기 어려움

3. 나머지 양형인자 : 현행 유지(의견 일치)

VI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 에 기준] 논의 결과

1. 체포·감금 유형 집행유예 기준

가. 요약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주요참작사유로 구분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의견 일치**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2) 일반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수정 : **의견 일치**

- 양형인자 부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체포·감금범죄의 죄질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체포·감금범죄의 죄질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질적 구분 : **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9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현행과 같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유지

- 양형위원회는 종래 양형기준의 설정, 수정에 있어서 ① 불특정, ② 다수, ③ 상당 기간 반복범행의 의미를 개별 범죄마다 달리 평가하여 왔는바, 이는 ‘개별적(범죄유형별) 양형기준제’를 채택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보아야 할뿐 개별 범죄마다 평가를 달리 한다고 하여 양형기준의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음.
- 양형기준은 책임과 예방을 구분하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예방적 관점을 더 중시하고 있으므로 형량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 기준에 있어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예를 들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또 ‘상당 기간 반복’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언제나 같은 참작사유로 규정되어야 할 필연적 근거도 없음(예를 들

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장물범죄 양형기준)

- 연혁적으로 ‘불특정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실제 사례에서 다른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예를 들어, 흥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단체 다중의 위력) 그 보완적 의미에서 일반 참작사유로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에서 일반 참작사유로 되었음
- ‘상당 기간 반복범행’은 행위자적 요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행위적 요소(결과 불법)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상당 기간 반복범행’을 보다 중하다고 보아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하는 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양형이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경험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는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가 많은데, 우발적인 범행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하고 있는 현 집행유예 기준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함이 타당함
- 다만 다수의견의 입장을 취하면서 현행 양형기준상 범죄유형별로 ① 불특정 피해자, ② 다수의 피해자, ③ 상당 기간 반복범행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 혹시라도 합리성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됨

(나) 소수 의견(2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와 통합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변경

- “① 불특정 또는 ②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③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하나의 포괄적 특별가중인자로 각 사유를 통합하여 규정할 정도의 불법성의 증가성이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의 규정 취지를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반영함이 양형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더불어 범죄의 행위 내지 행위자 반가치를 가중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 당초 일반참작사유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에 그 대부분이 이미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된 2인 이상 공동범행, 상습범, 흉기 등 휴대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아님
 - 특히 체포·감금의 경우에는 범행의 성격상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통계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제6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대상 범죄군 중 공갈과 손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4) 나머지 집행유예 기준 : 현행 유지(의견 일치)

2. 유기·학대 유형 집행유예 기준

가. 요약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 불특정 피해자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요참작사유로 구분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

(1)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 부분의 변경(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8인) ⇨ ‘다수의 피해자’로 변경

- 유기·학대범죄는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의 범행(유기) 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범행(학대)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상정하기 어

려우므로 부적절한 참작사유에 해당함

- 같은 취지에서 양형인자에서도 불특정 피해자는 제외한 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나) 소수 의견(3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변경

- 유기·학대범죄의 경우에도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제외할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 참고사항

- 제116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나 회의 후 소수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 3인 중 2인이 추가 연구를 거쳐 의견을 철회함
- 결과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 중 10명이 찬성 의견을, 1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함

(2)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질적 구분 : 의견 불일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현행과 같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유지(다수 의견 9인)할 것인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소수 의견 2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음
- 각 의견의 논거는 체포·감금 유형에서의 논거와 같음

(3) 나머지 집행유예 기준 : 현행 유지(의견 일치)

3.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유형 집행유예 기준

가. 요약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주요참작사유로 구분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주요참작사유로 구분하자는 소수의견 있음

나. 구체적인 논의 결과

(1)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를 ‘다수의 피해자’로 변경(의견 일치)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상정하기 어려움
- 같은 취지에서 양형인자에서도 불특정 피해자는 제외한 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질적 구분 : 의견 불일치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현행과 같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유지(다수 의견 9인)할 것인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소수 의견 2인)할 것인지 의견의 대립이 있었음
- 각 의견의 논거는 체포·감금 유형에서의 논거와 같음

(3)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의 추가 여부 : 추가 관련 의견 일치, 질적 구분 관련 의견 불일치

- 가중적 양형인자로 추가하기로 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자는 데에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 다만 다수 의견(8인)은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자는 입장이고, 소수 의견(2인)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자는 입장
 - 전문위원 1인은 의견 제시 보류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할 것인지,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취하였던 입장들과 대체로 일치함

(4) 나머지 집행유예 기준 : 현행 유지(의견 일치)

VIII.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논의 결과

1. 대유형1 [강요]

가. 현행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나. 제1유형(일반강요)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일반강요	강요	§ 324 ①	5년 ↓
		공동강요	폭처법 § 2 ② 2호	7년 6월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 16, 아동학대처벌법 § 60	7년 ↓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주요통계자료(2015. 7. 1.~ 2016. 12. 31.)

(가)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4	6	8	10	12	18	24	30	36			
감경	수	0	4	3	0	1	1	1	0	0	10	10.20	12.8
	비율	0.0	40.0	30.0	0.0	10.0	10.0	10.0	0.0	0.0	100.0		
기본	수	1	10	13	7	13	7	0	0	0	51	10.20	65.4
	비율	2.0	19.6	25.5	13.7	25.5	13.7	0.0	0.0	0.0	100.0		
가중	수	0	0	1	3	1	5	3	1	3	17	20.59	21.8
	비율	0.0	0.0	5.9	17.6	5.9	29.4	17.6	5.9	17.6	100.0		
전체	수	1	14	17	10	15	13	4	1	3	78	12.46	100.0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4	6	8	10	12	18	24	30	36			
	비율	1.3	17.9	21.8	12.8	19.2	16.7	5.1	1.3	3.8	100.0		

(나) 준수율

영역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감경	수	2	-	8	-	10	-
	비율	100.0	-	100.0	-	100.0	-
기본	수	3	0	47	1	50	1
	비율	100.0	0.0	97.9	2.1	98.0	2.0
가중	수	1	0	15	1	16	1
	비율	100.0	0.0	93.8	6.3	94.1	5.9
전체	수	6	0	70	2	76	2
	비율	100.0	0.0	97.2	2.8	97.4	2.6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변경이 없고, 양형기준 준수율도 97.4%에 달함

다. 제2유형(중·특수강요)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중·특수강요	중강요	§ 326	10년 ↓
		특수강요	§ 324 ②	10년 ↓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상습·누범·특수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형량분포

○ 주요 통계자료 없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소유형 2(중강요)의 형량범위 유지(의견 일치)**

(가) 기존 권고 형량범위 설정 이유

- 중강요죄는 실제 선고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형법상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중상해죄(형법 §258 ①, 1년~10년) 및 중유기죄(형법 §271 ③, 7년↓)를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였음
- 중상해에 대한 기존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중유기에 대한 기존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 중강요의 경우 중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점, 기본범죄의 법정형도 강요죄(5년↓)가 상해죄(7년↓) 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중상해보다 다소 가볍게 설정하였음

(나) 권고 형량범위(안)

- 중상해죄(1~10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없고, 기본범죄의 법정형도 강요죄가 상해죄보다 낮은 점, 특수강요죄의 법정형이 대폭 낮아진 점(2년↑→10년↓) 등 고려하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할 이유 없음
- 이중경합범임을 감안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 특수강요 사건의 양형 사례가 대부분 기본영역에 포함됨
- 중·특수강요와 누범강요 사이의 형량범위 차별화를 위해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특수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라. 제3유형(누범강요)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3	누범강요	누범강요	폭처법 § 2 ③ 2호	1~12년
		누범특수강요	폭처법 § 3 ④ 2호	2~20년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주요통계자료 : 없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권고형량 범위 하향 조정(의견 일치)**

(가) 기존 권고 형량범위 설정 이유

- 처벌조항 및 법정형이 같고 보호법익이 유사한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죄에 대해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정하였음(실제 두 범죄에 대한 평균 선고형량도 거의 비슷함)
- 최초에는 위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죄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설정하여 전문위원 제82차 전체회의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통과됨. 그러나 양형위원회 제57차 회의에서 제1, 2유형의 범죄와 제3유형의 범죄는 법정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구간이 차이가 나지 않아 형량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법정형이 상습·누범·특수 폭행 및 협박보다는 높고, 상습·누범·특수 상해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지정문화재절도, 일반건조물 등 방화에 대한 형량구간을 참고하되, 상습·누범·특수 상해죄보다는 낮게 설정하였음

(나) 유사 범죄유형의 기존 법정형 및 권고 형량범위

죄명	유형	법정형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상해	상습·누범·특수	3년 ↑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상습특수·누범특수	5년 ↑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공갈	상습·누범·특수	3년 ↑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상습특수·누범특수	5년 ↑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체포	상습·누범·특수	2년 ↑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감금	상습특수·누범특수	3년 ↑			
폭행	상습·누범·특수	1년 ↑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상습특수·누범특수	2년 ↑			
협박	상습·누범·특수	1년 ↑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상습특수·누범특수	2년 ↑			

죄명	법정형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지정문화재절도	2년 ↑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일반건조물 등 방화	2년 ↑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다) 권고 형량범위(안)

-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기존의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죄 보다 낮아진 점 고려
- 기본영역을 제2유형(8월-2년) 보다 높게 설정하되,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한 형이 기본영역에 포함되도록 기본영역의 하한을 10월로 정하고, 법정형 하한 등을 참작하여 기본영역 상한을 3년으로 정함
- 감경영역 또한 제2유형(4월-1년2월)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되 법정형의 하한(1년)을 고려하여 정함
- 누범체포·감금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그 권고형량 범위 참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강요	10월6월 - 2년 1년6월	1년6월 10월 - 3년	2년6월 1년6월 - 5년 4년

2. 대유형2 [권리행사방해 등]

가.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323	5년 ↓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3) 주요통계자료(2015. 7. 1.~ 2016. 12. 31.)

(가)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3	4	5	6	8	10	12	14	18	20	24			
감경	수	3	46	4	32	5	0	0	0	0	0	0	90	4.94	26.8
	비율	3.3	51.1	4.4	35.6	5.6	0.0	0.0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28	2	153	41	13	3	1	1	1	0	243	6.53	72.3
	비율	0.0	11.5	0.8	63.0	16.9	5.3	1.2	0.4	0.4	0.4	0.0	100.0		
가중	수	0	0	0	0	0	0	1	0	1	0	1	3	18.00	0.9
	비율	0.0	0.0	0.0	0.0	0.0	0.0	33.3	0.0	33.3	0.0	33.3	100.0		
전체	수	3	74	6	185	46	13	4	1	2	1	1	336	6.21	100.0
	비율	0.9	22.0	1.8	55.1	13.7	3.9	1.2	0.3	0.6	0.3	0.3	100.0		

(나) 준수율

영역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감경	수	18	-	72	-	90	-
	비율	100.0	-	100.0	-	100.0	-
기본	수	23	4	190	26	213	30
	비율	85.2	14.8	88.0	12.0	87.7	12.3
가중	수	1	-	2	-	3	-
	비율	100.0	-	100.0	-	100.0	-
전체	수	42	4	264	26	306	30

영역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비율	91.3	8.7	91.0	9.0	91.1	8.9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준수율이 91%를 상회하여 높은 수준 유지
- 강요죄, 강제집행면탈죄와의 균형상 현행 유지 의견임

나. 제2유형(점유강취/준점유강취)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점유강취 / 준점유강취	점유강취	§ 325 ①	7년 ↓
		준점유강취	§ 325 ②	7년 ↓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주요통계자료 : 없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령이나 사정의 변경 없고, 선고사례도 없으므로 현행 유지 의견

다. 제3유형(증권리행사방해)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3	증권리행사방해	증권리행사방해	§ 326	10년 ↓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주요통계자료 : 없음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령 또는 사정의 변경 없고, 실제 선고된 사례도 없으므로 현행 유지 의견

라.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1)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4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 327	3년 ↓

(2) 현재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3) 주요통계자료(2015. 7. 1.~ 2016. 12. 31.)

(가) 형량분포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4	6	8	10	12	14	18	42			
감경	수	13	13	4	0	1	0	0	0	31	5.61	30.7
	비율	41.9	41.9	12.9	0.0	3.2	0.0	0.0	0.0	100.0		
기본	수	3	22	23	11	4	0	3	0	66	8.18	65.3
	비율	4.5	33.3	34.8	16.7	6.1	0.0	4.5	0.0	100.0		
가중	수	0	0	1	0	1	1	0	1	4	19.00	4.0
	비율	0.0	0.0	25.0	0.0	25.0	25.0	0.0	25.0	100.0		
전체	수	16	35	28	11	6	1	3	1	101	7.82	100.0
	비율	15.8	34.7	27.7	10.9	5.9	1.0	3.0	1.0	100.0		

(나) 준수율

영역		2015년		2016년		전체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감경	수	3	-	28	-	31	-
	비율	100.0	-	100.0	-	100.0	-
기본	수	6	0	57	3	63	3
	비율	100.0	0.0	95.0	5.0	95.5	4.5
가중	수	1	-	3	-	4	-
	비율	100.0	-	100.0	-	100.0	-
전체	수	10	0	88	3	98	3
	비율	100.0	0.0	96.7	3.3	97.0	3.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 준수율이 97%에 이르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3. 소결론 - **형량범위(안) : 의견 일치**

가. 개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중특수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3	누범강요	10월 6월 - 2년 1년6월	1년6월 10월 - 3년	2년6월 1년6월 - 5년 4년

나.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3	중권리행사방해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4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IX.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 양형인자

가. 강요(대유형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하자는 소수 의견 있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누범 강요 유형은 제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중
 관호 부분 수정 방안 : 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9인) : ‘(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하자는 견해

- 종래 3유형에는 상습·누범·특수강요가 포함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유형분류 변경에 따라 특수강요는 2유형에, 누범강요는 3유형으로 분류되고, 상습강요는 삭제되었음. 이러한 변경에 따라 위양형인자의 적용제외 범위를 특정할 필요 있음
- 폭력범죄나 체포·감금범죄에서도 위양형인자를 상습·누범·특수군에 적용하지 않음⁸⁾

(나) 소수 의견(2인) :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하자는 견해

- 폭력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강요범죄의 경우에도 다수 범죄자가 가담한 범행에 있어서는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 특수강요의 경우에 동양형인자를 적용하면 범죄구성요건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 그러나 누범강요의 경우에는 위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음
- 강요범죄는 특수상해 경우와 달리 특수강요 유형이 누범유형으로

8) 종전 84차 전문위원회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인자 검토에서도 폭력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상습·누범·특수범죄의 경우 위양형인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부터 분리되었고 범정형도 각각 별도로 규정되었으므로, 누범강요의 경우에는 위 양형인자를 적용함이 타당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의견 일치)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3)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누범강요 유형은 제외)’ 중 괄호 부분을 ‘(3유형 제외)’로 수정(의견 일치)

○ 법 개정에 따라 강요죄의 상습범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3유형 명칭이 누범강요로 변경됨. 3유형 대상범죄가 누범강요, 누범 특수강요의 2가지에 불과하므로 3유형 전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해의 편의 도모

(4) 나머지 부분 : 현행 유지(의견 일치)

나. 권리행사방해 등(대유형 2) : 현행 유지(의견 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양형기준 설정 당시(2015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적 기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 양형인자를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률 개정이 없으며, 유형분류의 수정도 없는 등 수정의 필요성이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가. 강요(대유형1)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을 보이거나,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주요참작사유로 구분하지는 소수의견 있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로 수정 : **의견 일치**

- 폭력행위처벌법의 조문이 삭제되고,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형법 조문의 표현을 사용함

(2) 일반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수정 : **의견 일치**

- 양형인자 부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죄질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죄질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질적 구분 : **의견 불일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현행과 같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유지(다수의견 7인)할 것인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소수의견 2인)할 것인지 의견의 대립이 있었음

- 각 의견의 논거는 앞서 보고드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와 같음

나. 권리행사방해 등(대유형 2) : 현행 유지(의견 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X. 향후 일정

-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 일시: 2018. 5. 28. 15:00~